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홍식

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김종필 의원 등 7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4년 5월 29일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5월 31일

3. 제안이유

무단방치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,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교통안전기본계획·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

나.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추진 시 충북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(안 제5조)

다. 무단방치되었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의2)

라.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안전교육·운행 훈련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의3)

마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2조, 제3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)

5. 검토내용

- 안 제2조는 2020년 12월 10일 시행된 「도로교통법」(법률 제 17371호)에서 신설된 “개인형 이동장치”의 정의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으로,
 - 관련법령과 조례 사이의 용어를 통일시킴으로써 법규정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더 쉽게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4조는 충청북도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,
 - 「교통안전법」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충청북도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전반적인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,
 - 전체적인 교통안전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5조는 제2항을 신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추진 시 충북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,
 - 교통안전 전문가 외에 실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도민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불편을 느끼는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7조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단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할 수

있는 곳을 열거하고, 시장·군수에게 「도로교통법」 제35조 (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)에 따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하려는 것으로,

- 보도 중앙, 횡단보도, 대중교통 승하차장·진출입 장소, 건물·상가·빌딩 등 진출입로와 같이 일반적인 보행을 방해할 수 있는 곳이나 소방시설 인근, 육교·계단·터널 등과 같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곳에 방치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고 판단됨.

- 안 제7조의3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·운행 훈련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그 밖의 조문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조례안 예고('24. 5. 31 ~ 6. 7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」을 검토한 결과, 「도로교통법」에 신설된 “개인형 이동장치” 정의 따르도록 하고,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형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, 무단 방치되었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위 검토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- 다만,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소위 “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법률안”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것이 유력한 만큼 관련 법령의 제정 여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, 법령에 따라 조례의 개정사항을 파악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임.
-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의 시행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, 본 조례 제6조에 따라 교육장의 지정,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